

 (株) 一志테크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1 / 12

목 차

제 1 장	개 요
제 2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4 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 5 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7 장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및 내부고발 보호
제 8 장	윤리경영 점검 및 교육
제 9 장	위조 부품 방지 및 책임 자재 구매
제 10 장	보 칙
제 11 장	부 칙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0	2024.01.01	2024.01.01	윤리규범 최초 제정
1			
2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직 책	선 임	W/G 장	본부장	부사장	대표이사
성 명	노 주 연	권 준 석	강 대 근	구 준 희	구 준 모
서 명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2 / 12

제1장 개 요

제 1 조【 목 적 】

본 규정은 투명한 윤리경영 및 혁신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일지테크(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제 3자도 함께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 · 접대

- 식사, 주류, 향락, 오락 골프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금품, 향응 ·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지원, 관광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4. 협력회사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 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6. 불가피한 경우

- 본인 부재 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3 / 12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4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일지테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사내 윤리헌장, 윤리강령 등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4. 임직원은 「인권정책」 등을 준수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힘쓴다.

제 5 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1.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3. 회사는 임직원간 성적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6 조【 차별금지 】

1. 회사는 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아니 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실적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제 7 조【 상호존중 】

1.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존중을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3. 임직원은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아니 한다.
4. 임직원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5.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4 / 12

하지 아니 한다.

제 8 조【 임직원 존중 및 인재육성 】

1.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2.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4.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
5. 회사는 임직원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9 조【 삶의 질 향상 】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10 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개인적 피해 및 회사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한다.
2. 임직원은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아니 한다.
3. 임직원은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아니 한다.
4. 임직원은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사익편취 금지 및 반부패 】

1.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 된다.
2. 임직원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5 / 12

3.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4. 회사는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 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회사는 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 · 배임 등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2조【 이해상충 금지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적인 청탁 금지 】

1. 회사는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회사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회사는 기타 정당한 거래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를 금지한다.

제14조【 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

1.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지적 재산권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지적 재산권 및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제15조【 투명한 정보 및 재정적 책임 】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 한다.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6 / 12

4.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5. 임직원은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6조【 고객가치 제고 】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7조【 고객신뢰 제고 】

1. 회사는 고객의 신뢰가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8조【 고객이익과 정보보호 】

1.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 한다.
2.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다.
4. 회사는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제4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 19 조【 기업가치 제고 】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7 / 12

회사는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해야 한다.

제 20 조【 투명한 정보 제공 】

회사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재무제표 등의 공시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 조【 주주권리 보호 】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 등을 존중한다.

제 22 조【 주주이익 보호 】

1. 임직원은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한다.

제5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 23 조【 거래법규 준수 】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 24 조【 자유경쟁 추구 】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 25 조【 공정한 거래 】

1.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회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8 / 12

4.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5. 회사는 모든 형태의 반경쟁 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다.
6. 회사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6 조【 부당행위 금지 】

1.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아니 한다.
2. 회사는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3. 회사는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4. 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5. 회사는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또는 편의 이하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아니 한다.
6. 회사는 협력회사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일지테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준법 및 반부패 경영 주관부서 이하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상호발전 추구 】

1.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가치를 상호 공유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8 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9 / 12

제 29 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 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아니 한다.

제 30 조【 환경 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 조【 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32 조【 사회발전에 기여 】

1. 회사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이익과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사는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4. 회사는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5. 회사는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 33 조【 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4 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10 / 12

제 35 조【 수출 제한 및 경제 제재 준수 】

1. 회사는 수출 제한 및 경제 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사는 수출 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 36 조【 법규의 준수 】

1.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제7장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및 내부 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제 37 조【 윤리위반 신고 】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인사총무팀'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일지테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신고자 보호 】

'인사총무팀'은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 39 조【 보상체계 】

회사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0 조【 징계 】

1. 회사는 윤리규범과 세부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징계하도록 한다.
2.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윤리경영 점검 및 교육

제 41 조【 윤리경영 담당부서 】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11 / 12

'인사총무팀'은 임직원의 윤리 규범 준수와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2 조【 윤리경영 점검 】

1. '인사총무팀'은 윤리경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윤리규범」의 업무적용 시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주요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그 해석을 요청한다.
2. 회사는 윤리경영의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윤리규정 이 해도를 점검하고 윤리수준의 자가진단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

제 43 조【 윤리경영 교육 】

1. 관리자는 전 직원 혹은 신입직원 및 해당직원에 대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윤리경영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후 모든 임직원은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3.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

제9장 위조 부품 방지 및 책임 자재 구매

제 44 조【 위조 부품 방지 】

1.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하지 아니 한다.
2. 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한다.
3. 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45 조【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1. 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

	<h1>윤리규범</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12 / 12

- 다.
2. 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아니 한다.
 3. 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4. 회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회사는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 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 46 조【 준수의무와 책임 】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1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